

교육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09. 01.

개정 2026. 0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 본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수업시간은 본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전형
3. 필기 또는 구술 및 면접고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4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기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1>

1. 국내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세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3.28., 2008.3.1, 2013.3.14., 2014.3.1>

1. 현직 교직원은 모든 전공에 입학할 수 있다.
2. 부전공 등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전공 취득 관련 전공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 교원에 한해 입학할 수 있다.
 - 나. 삭제 <2016.4.30.>
 - 다. 특수교육전공은 현직교사 또는 특수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입학할 수 있다.
3. 교원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교육학석사 학위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전공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의 입학 자격은 제1항 각 호의 1과 같다.

- 제5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 또는 구술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1>
- ② 본 대학원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방법에 준하되,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1>
- ③ 대학원 학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정원외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필기심사(또는 한국어 구술심사)로 실시한다. 다만, 국내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한국어심사를 면제한다.

제6조(입학전공분야)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및 유사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 제8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등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재입학생의 제적전 취득학점 인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학적

- 제10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 자의 학적을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 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제10조의 2(수료자의 등록등)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원에 논문준비, 초과학점 이수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4>

제11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 ④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2.>

제12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적' 처리를 한다.

제14조(수료) ① 수료자 중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4>

-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개정 2007.3.1., 2017.6.14>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3. 비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 내에 추가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 2(전공 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차 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학업성적표

- ②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7.6.14>

제15조(증명서 발급)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연구과정 이수증명서(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발급 가능)
6. 학위수여증명서

제4장 교과과정, 학점 이전 및 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제16조(교과과정의 편성) 석사학위과정 교과과정 편성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 2008.3.1., 2011.4.27., 2017.6.14., 2018.1.8>

제17조(교과과정 개편)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 개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전공과목 및 공통과목 등의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8.>

제19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절 보충과목 <삭제 2017.6.14>

제20조(보충과목) <삭제 2017.6.14>

제21조(보충과목 면제) <삭제 2017.6.14>

제22조(보충과목 학점인정) <삭제 2017.6.14>

제3절 학점 이전 및 인정

제23조(학점이전) ① 입학 전에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17.6.14., 2020.3.1.>

② 제1항의 학점이전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27., 2020.3.1.>

③ <삭제 2020.3.1.>

④ 본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는 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학점에 한한다. <개정 2011.4.27>

제24조(타 전공 학점인정)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전공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 <개정 2021.11.16>

제4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25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 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6조의 2(학점교류) ① 본 대학원 학생이 본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다.

② 재학기간 중 학점교류 수강 가능 과목 수는 2과목 이상 총 6학점까지 학점교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4.3.1>

[본조신설 2011.4.27]

제5절 학점 및 성적

제2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이수 학점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 학점 이수가 가능하나 2개 학기 기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2014.10.1., 2016.1.22., 2017.6.14., 2020.3.1.>

② 삭제<2016.1.22.>

③ 5차 학기에는 위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3.1.>

[전문개정 2007.3.1]

제28조(수료 학점 등) ① 수료학점은 총 24학점 이상이며, 이 중 공통과목은 3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공통과목의 학점을 전공과목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8>

② 비논문학위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부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취득 유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24학점 이외에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1.4.27., 2017.6.14.>

[전문개정 2007.3.1]

제29조(교과목 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1>

③ <삭제 2014.10.1>

제30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성적마감 후 2주 이내에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당해학기 수강신청서에서 삭제되며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종합시험 <장제목 변경 2017.6.14>

제1절 종합시험

제31조(시험영역) 종합시험은 전공에서 지정한 2~3개 영역으로 한다. <개정 2018.1.8., 2021.3.1>

제32조(응시자격) ① 삭제 <2018.1.8.>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18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8.>

[전문개정 2007.3.1]

제3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사전 공고하여 학기중 1회 실시한다.

제34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① 종합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전공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시험시간은 영역을 통합하여 총 120분으로 한다. <개정 2021.3.1.>

제35조의 2 삭제 <2018.1.8.>

제2절 학위인정시험 <삭제 2017.6.14>

제36조(비논문학위과정 신청서 제출) <삭제 2017.6.14>

제37조(시험과목) <삭제 2017.6.14>

제38조(응시자격) <삭제 2017.6.14>

제39조(시험시기) <삭제 2017.6.14>

제40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삭제 2017.6.14>

제3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제41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교육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17.6.14>

제42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각 전공별 주임교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영역별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21.3.1.>

제43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채점을 의뢰할 수도 있다. <개정 2017.6.14>

제44조(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각 영역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21.3.1.>

② 종합시험의 경우 영역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7.6.14., 2021.3.1.>

제45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4>

② 종합시험은 재학연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③ <삭제 2017.6.14.>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46조(논문지도교수 신청)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부터 학위취득 유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차기 학기부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7.6.14.>

제47조(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8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초에 전공주임교수가 제청하고 대학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1.>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50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차 학기부터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직전학기까지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지도하에 발표한 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 2014.10.1>

제51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제52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교육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4.10.1., 2017.6.14.>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소정의 논문심사료

제53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 2026.2.7.>

제54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심사논문의 원고는 5월과 11월중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 2014.10.1., 2017.6.14.>

제55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발표를 명할 수 있다.

-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논문심사

제57조(심사구분) 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제58조(심사절차)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위원회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 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59조(논문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60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과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15.>

제61조(논문점수와 등급) ① 논문심사위원은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심사점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논문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A, B, F 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F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62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합격”, “수정·보완 조건으로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논문확인)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 조건으로 합격”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64조(우수논문 선정) 매 학기 석사학위청구심사 논문중에서 교과교육 또는 교육현장에 관한 주제를 다룬 논문으로 모든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평점이 전부 “A”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여 논문의 연구자에게는 “우수논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학위 수여

제65조(학위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내용 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한 자
2. 학위취득 유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28조 제1항의 24학점 이외에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개정 2017.6.14>

②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공분야별 학위 명칭은 대학원 학칙상의 별표 2와 같다.

③ 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

제66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7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제69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70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

제71조(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② 본 대학원에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성심대학원장,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25.2.28.>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주임교수

제75조(전공주임교수) ① 총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08.3.1>

②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의 당해 전공부문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제76조(학사전담교수) ① 대학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사전담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사전담교수는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전반적인 학사지도 <개정 2014.10.1>
2. 원생 상담
3. 대학원장이나 전공주임교수가 위촉하는 기타 사항

[본조신설 2008.3.1]

부칙

제1 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제16조 단서)은 200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4조제2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세칙(제4조 제2항)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 조치) ① 이 학사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학사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구 학사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사시행세칙 시행 당시의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사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24조,제28조②항,제39조의 2,제40조 내지제42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79조,제80조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21조, 제26조의 2, 제27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제54조, 제56조, 제58조, 제80조)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14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69조)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7조, 제28조)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1조)은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6조, 제10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제46조, 제52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6조,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의 2)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23조, 제27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44조)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4조)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2조)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3조)은 2026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0조)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 ○ ○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 ○ 박사 ○ ○ ○

가톨릭대학교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연구과정 이수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일

위 사람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
분야에 관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연구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